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4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김형동 · 김소희 · 한지아
우재준 · 고동진 · 진종오
임이자 · 조승환 · 김위상
안철수 · 윤상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도청을 각 지방의 거점이 되는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이 없음.

그러나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이하 “도청이전신도시”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

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times$ 1천5백만원
[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로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3조의3(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이하 “도청이전신도시”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u>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
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
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
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
(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
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
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
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
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
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
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